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9,537,459	9,586,124
일반회계		246,567,301	7,397,019
특별회계		72,970,158	2,189,105
	공기업특별회계	7,139,203	214,176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7,139,203	214,176
	기타특별회계	65,830,955	1,974,92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917,118	87,51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98,760	14,963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84,465	26,534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3,564,746	706,94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411,388	282,34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464,300	343,929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098,000	62,94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4,366,487	430,995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510,160	15,305
	기반시설특별회계	115,531	3,46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생 략"

제 4 조 "생 략"

제 5 조 "생 략"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10,09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